

## ●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-0155호

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5월 20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###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국민체육진흥진흥계정 사용사업의 성과를 측정·평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(이하 진흥공단)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「상법」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18760호(2022.1.18. 일부개정) / 법률 제18808호(2022.2.3. 일부개정), 2022.8.11. 시행)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, 평가단 구성·운영, 조사연구 규정 신설(안 제23조의4, 안 제23조의5, 안제23조의6)
- 나.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'단체나 개인'에서 '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「상법」상의 주식회사'로 하고 수탁사업자 공모 절차 삭제(안 제27조 개정, 제31조제4항 삭제)
- 다.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(안 제34조, 제38조)
- 라.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,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(별표5)
- 마.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,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,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(안 제44조의3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,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
- 전자우편 : lejuhe@korea.kr
- 팩스 : (044) 203 - 311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(전화 (044) 203 - 3110/3119, 팩스 (044) 203 - 348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